

2018년 외부감사법의 개정 -신외감법-

2023년 2학기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1. 회계투명성과 국가경쟁력

회계투명성 :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사결정자들이 관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시에 공시하는 것

국가경쟁력 : 복잡한 세계경제환경에서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때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

*** 회계투명성의 향상 => 국가경쟁력의 강화**

높은 회계투명성이 갖추어 지면 투자자들의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의 **시장 유동성, 자본 비용, 경영 및 투자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됨.

- (1) 회계투명성이 낮다면 투자자 간의 정보가 불균형하게 분포함. 정보를 적게 가진 투자자들은 정보를 많이 가진 투자자에 비해 투자를 기피하게 됨. 따라서 시장 유동성이 낮아짐.
- (2) 회계투명성이 낮다면 투자자들이 회사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에 위험성을 느껴, 높은 자본수익률을 요구한다. 따라서 자본비용이 상승한다.
- (3) 회계투명성이 낮다면 투자자들은 회사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 경영자들의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효율적이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다. (대리인 문제 발생)

1. 회계투명성과 국가경쟁력

* 회계투명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 (1) 제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 여부.
- (2) 기업들이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조작 및 오류 없이 제대로 작성하는지 감시/감독하는 관련 법규 및 제도가 있는지 여부.
- (3) 외부 정보이용자들이 기업들의 공시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한지 여부.

* 한국의 경우

2019년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총 63개국 중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8위였지만, 회계투명성 지표는 61위였다. WEF(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서도 141개국 중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3위였지만, 회계투명성 지표는 37위에 머물렀음. 이를 통해 판단했을 때, 회계투명성을 높인다면 국가경쟁력이 올라갈 여지가 존재.

금융감독원이 기업 경영진, 공인회계사, 회계학계 교수 등을 대상으로 2017년 회계투명성에 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장기업 재무제표 작성 수준은 7점 만점에 4.2점, 회계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은 7점 만점에 4점에 불과했음.

2.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분식회계(회계부정) : 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가공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적게 계상 혹은 누락시키는 행위.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사이에 전모가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은 여러 면에서 한국 사회에 큰 여파를 미치게 됨.

- 1) 분식회계의 규모의 추정치가 최소 3조~4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분식회계
- 2) 적자 회사가 가공의 이익을 꾸며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것처럼 보고함. 조작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수조 원의 자금을 추가조달.
- 3) 두 명의 CEO와 다른 두 명의 CFO가 함께 최소 5년의 오랜 기간 분식회계를 주도 .
- 4) 다수의 직원이 분식회계에 대해 알고 있었고, 분식회계를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함.
- 5) 분식회계를 통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체결한 경영 목표를 달성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받은 보너스가 수천억 원에 달함.
- 6) 분식회계 때문에 부실이 더욱 심화돼 결과적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약 10조 원 이상의 공적자금(세금)이 투입됨.
- 7) 다른 회사의 분식회계 사례는 대부분 회사가 상장폐지 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반면, 본 사례는 경영진의 연임 그리고 보너스를 위한 분식회계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2.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정치권력의 관계

분식회계가 저질러지는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는 총 30명이고, 이 중 15명이 정치권 출신 또는 정치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나머지 15명 또한 정치권은 아니더라도 정부의 각종 부처 혹은 기타 권력 기관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여럿 있었다.

경영활동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이러한 사외이사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시 및 감독 활동을 제대로 수행했을 가능성은 낮다. 사외이사 자리만 이런 것이 아니다. 언론에서는 2000년 이후 모두 60명의 정관계 및 산업은행 인사가 고문, 상담역, 자문역 등의 명목 뿐인 자리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대우조선해양에서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약 50%의 사외이사가 정치권 인사들로 이루어진 이런 사례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경우이며 이런 상황에서 임명된 경영자는 회사를 잘 경영해서 발전시킨다는 목표보다는 자기를 임명해준 정치권력자들에게 은혜를 갚거나 또는 이들에게 잘 보여서 연임을 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아무리 경영 성과가 좋더라도 권력자에게 밍보이면 연임이 어렵기 때문이다.

2.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의 특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은 분식회계가 벌어진 기간이 아주 길다는 특징을 가진다.

대부분의 분식회계의 경우 기간은 1~2년 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단기간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덜 쌓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부풀렸다면 그 목적이 달성된 후 과거 적게 쌓은 대손충당금 때문에 더 많은 대손상각비가 발생하게 되거나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므로 그 후로는 같은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조사가 수행된 모든 연도에서 분식회계가 발견됐고, 시간이 갈수록 분식회계 규모가 커졌다. 과거의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해 더 큰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왔던 것이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경영성과와 관련된 임직원 보너스(성과급잔치)로 추정된다.

2000년 IMF 위기 후 부도직전의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권을 인수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경영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경영 계약의 핵심은 정해진 목표 이익을 달성한 경우에만 성과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경영계약에 의한 성과 보너스를 타기 위해 전체 임직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하였고 분식회계를 통한 성과 보너스의 규모가 고재호 사장 시절에만 임원의 경우 100억 원, 기타 직원은 총 5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2.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의 영향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최소 10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세금)이 투입됐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주로 건조 예정인 선박이나 해상플랜트의 예상 건조 원가를 실제보다 낮춰 잡아 공사 진행률을 과다하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2000억 원을 들여야 만들 수 있는 배를 1500억 원 쯤에 만들 수 있다고 공식 서류에는 표시돼 있다.

(이 서류를 본 수주 부서에는 회사가 원가 절감을 잘하고 건조 기술이 발달해서 과거 2000억 원 쯤에 만들 수 있었던 배를 이제는 1500억 원 쯤에 만들 수 있겠다고 잘못 이해하고 신규 선박을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해서 1700억 원쯤에 배를 만들겠다고 주문을 따왔다.) 이런 식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많은 배를 수주했기 때문에 부실 규모가 불어났으며 적자 회사를 흑자로 조작한 결과,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낸 것만 6000억 원 정도에 이른다.

이런 행위가 대우조선해양만 부실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적극적으로 낮은 가격에 배를 수주하니 경쟁 업체인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도 덩달아 낮은 가격에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선박 수주 단가가 크게 떨어졌다. 즉,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한 행동들이 국내 다른 조선업체들의 위기까지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의 영향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은 안진회계법인이다. 산업은행은 안진회계법인이 부실하게 감사를 수행해서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했고, 산업은행은 안진회계법인만 믿고 있었으므로 부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반론이 있음.]

안진회계법인은 2015년 들어서야 분식회계를 적발해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시장에서 수차례 의심의 눈길을 보내왔다. 정권이 바뀌고 새 사장이 임명된 뒤 마침내 안진회계법인이 분식회계의 증거를 찾아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감사보고서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매니저를 맡아 감사를 총괄한 배모 안진회계법인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문제를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배이사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진회계법인은 부실감사에 대한 대가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회계법인의 경우 1년간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인의 존폐여부가 결정될 만큼 가혹한 처분이라는 것이 안진측의 주장이었다.) 처벌 수위에 대한 치열한 공방 끝에 타협점은 1년간 신규 감사 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3. 미국의 경우 : 엔론사태와 사비엔스-옥슬리 법안(SOX)

엔론은 미국 재계 서열 5위의 건실한 에너지 기업이었다. 엔론의 성장은 주로 인수합병(M&A)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은 주식이나 사채의 발행을 통해 마련했다. 그런데 엔론이 M&A로 인수한 기업은 대부분 기존 사업에 비해 마진이 높지 않거나 심지어 손실을 볼 때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 자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엔론은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이 많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후 시장의 기대 수준을 초과하는 업적을 발표하며 주가를 끌어 올리고 동시에 사채와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신규 자금을 마련했다.

엔론이 사용한 분식회계 방법

특수목적법인(SPE)를 만들고 이 법인에 부실을 떠넘겨 숨기는 방법이였다. SPE는 엔론의 부실자산을 비싼 값으로 사고, 엔론에게 낮은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엔론의 이익을 부풀렸다. SPE의 막대한 손실을 엔론이 지급보증을 해 주면서 이런 내용을 재무제표에서 숨기는 방법으로 엔론의 이익을 과대하게 발표할 수 있었다.

결국 내부 고발로 분식회계가 탄로났고 엔론은 파산했다. 당시 엔론의 CEO인 스킨링은 증권사기죄로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엔론의 감사인이었던 미국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던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도 많은 기업들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어 1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엔론 사건 이후 미국 의회는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미역사상 최고로 강력한 기업 규제 법안인 **사비엔스-옥슬리 법안을 제정**하여 기업의 내부 통제와 외부 감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4. 2018년 외부감사법의 개정(신외감법)

회계감사인 구속과 회계법인 신규 수임 1년 금지 등의 중징계로 이어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약화시켰다. 재계와 학계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개정을 발표했다. 미국의 경우도 엔론 사태 이후 사비엔스 옥슬리 법안을 발표하여 기업의 내부 통제와 외부 감사 절차를 강화한 것처럼, 금융당국 또한 신외감법의 도입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2018년 도입된 신외감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부감사 대상요건의 변경
2. 회사의 회계처리 책임 및 자체역량 강화
3.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 제고
4. 금융당국 회계감독업무 선진화

4-1. 2018년 외부감사법의 개정(신외감법) : 외부감사 대상요건의 변경

개정목적 : 외부감사대상요건에 경제적 실질반영

- * 의도적으로 자산, 부채 등을 조정하여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 * 경제적 실질이 외부감사대상 기업들과 유사하나, 형태를 유한회사로 운영하여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소분류	조항
1. 외부감사대상 기준	기존기준(자산,부채,종업원수)에 매출액 기준 추가
2. 외부감사대상 유형	기존기준(주식회사)에 유한회사 추가

4-1. 2018년 외부감사법의 개정(신외감법) : 외부감사 대상요건의 변경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5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외부감사 제외대상 소규모회사 (3가지 이상 해당 시)	1.자산 120억원 미만 2.부채 70억원 미만 3.매출액 100억원 미만 4.종업원수 100명 미만	1.자산 120억원 미만 2.부채 70억원 미만 3.매출액 100억원 미만 4.종업원수 100명 미만 5.사원수 50명 미만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를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변경하였다. 기존의 외감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외국계기업 등 몇몇 기업은 자회사를 유한회사의 형태로 운영하여 외부감사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는데, 회계감독 규제와 회계정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 기준을 추가하였다.

－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매출액 기준을 추가한 취지로 기업들이 자산, 부채 등을 자의적으로 낮추어도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빠지기 어려운 구조로 개선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4-1. 2018년 외부감사법의 개정(신외감법) : 외부감사 대상요건의 변경

구분	주권상장법인				비상장 법인	유한 회사	총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2019년	790사	1,385사	151사	2,326사	30,105사	-	32,431사
2020년	792사	1,447사	143사	2,382사	28,887사	475사	31,744사
2021년	815사	1,511사	131사	2,457사	30,315사	478사	33,250사
2019년대비 2020년증감	2 (0.3%)	62 (4.5%)	△8 (△5.3%)	56사 (2.4%)	△1,218사 (△4.0%)	475사 (-)	△687사 (△2.1%)
2020년대비 2021년증감	23 (2.9%)	64 (4.4%)	△12 (△8.4%)	75사 (3.1%)	1,428사 (4.9%)	3사 (0.6%)	1,506사 (4.7%)
2019년대비 2021년증감	25 (3.1%)	126 (9%)	△20 (△13.2%)	131사 (5.6%)	210사 (0.7%)	478사 (-)	819사 (2.5%)

4-2. 2018년 외부감사법의 개정(신외감법) : 회사의 회계처리 책임 및 자체역량 강화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하기 위한 조항 신설.

－ 내부회계관리제도란 2000년대 중반, SOX법을 참고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회사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를 뜻한다. 하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한 후 10년 이상 평가를 하지 않고 방치한 회사가 있었을 만큼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고 이에 신외감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조항을 추가함.

(2)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조항 마련.

－ 회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 뿐 아니라 증권선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게 하였다.

(3)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 금지조항 추가

－ 종전 외감법 하에서는 감사인 및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처리 자문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던 것에서, 신외감법 하에서는 감사를 받는 회사에게도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처리 자문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4)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무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조항 신설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해야 하고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

4-2. 2018년 외부감사법의 개정(신외감법) : 회사의 회계처리 책임 및 자체역량 강화

분류	조항	적용연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실효성 확보	인증수준을 검토(Review)에서 감사(Audit)로 상향	2019년
	연결기준 시행 (개별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연결회사의 재무제표까지)	2023년
	대표자의 주주총회 보고의무 강화	2019년
감사 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감사 전 재무제표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의무화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강화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사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무 및 권한 강화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상장회사			
	2조이상	5천억이상 2조미만	1천억이상 5천억미만	1천억미만
인증수준상향	2019년 사업연도	2020년 사업연도	2022년 사업연도	2023년 사업연도

4-3. 2018년 외부감사법의 개정(신외감법)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 제고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 회사가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한 후에는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동일 감사인에 의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 간의 유착관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감사인 선임기한 및 선임절차 개선

– 기존의 외감법에서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했던 것에서 신외감법에서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었다. 통상 3월 말까지는 사업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외부감사는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기존의 외감법에서는 감사인 선임기한이 외부감사가 끝난 후인 4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외부감사가 종료되고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어, 감사과정에서 까다로운 감사를 하거나 비적정의견을 표현한 감사인은 다시 감사인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에 신외감법에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제시 전에 감사인 선임계약이 체결되도록 감사인 선임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다.

(3)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요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인력, 예산,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후 심리 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이 가능하도록 상장법인 감사인의 요건을 제한

4-3. 2018년 외부감사법의 개정(신외감법)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 제고

[4] 표준감사시간의 도입

– 표준감사시간이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절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을 말한다.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가 크게 늘어났다.

[5] 외부감사에 관한 품질관리기준이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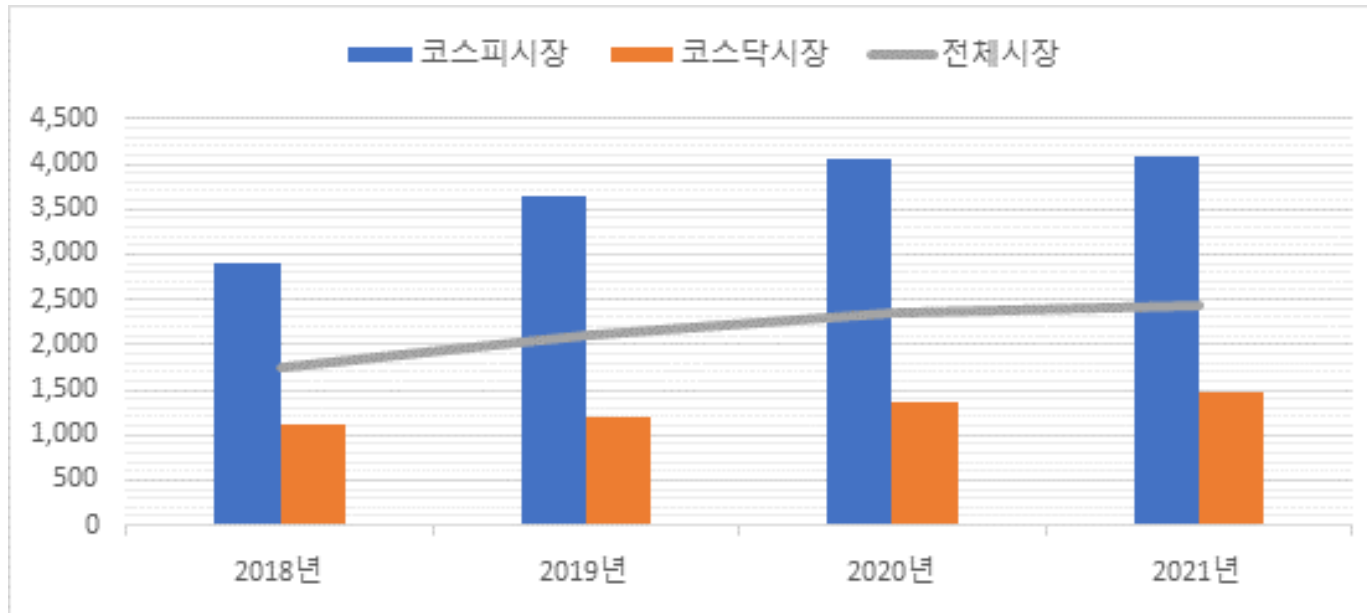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품질관리기준을 정하며, 감사인은 이를 준수해야 하고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분류	조항	적용연도
감사인 독립성 제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	2020년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및 선임절차 개선	2019년
감사품질 제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 도입	
	외부감사 품질관리기준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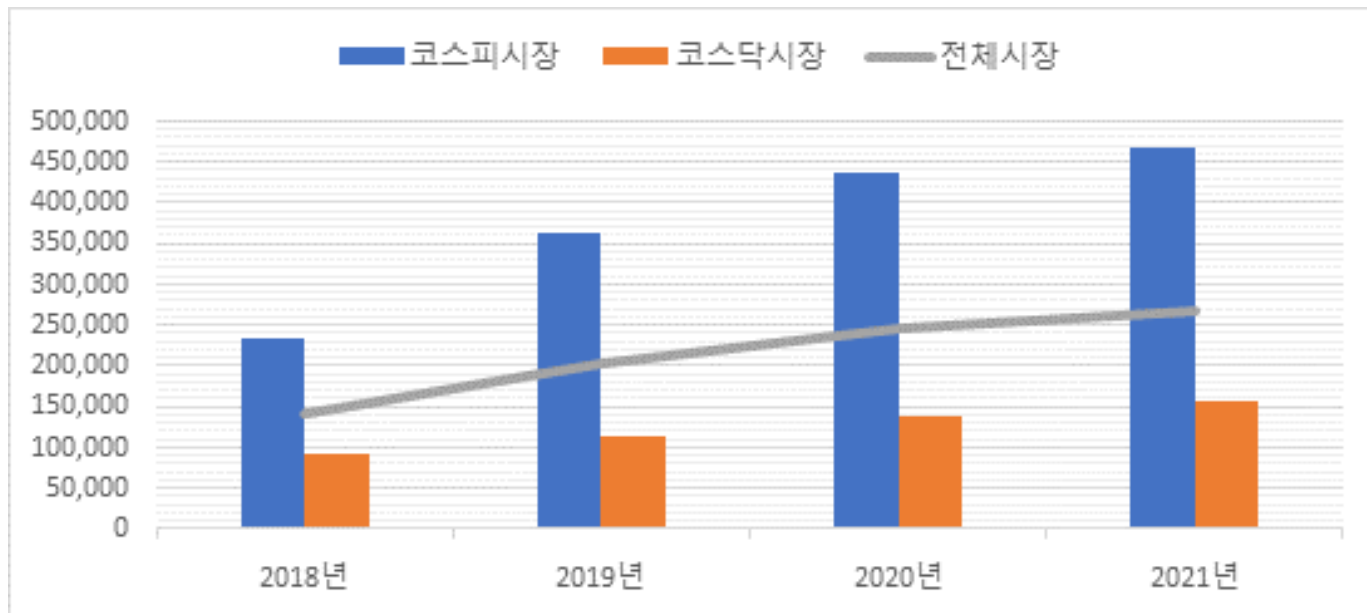
4-3. 2018년 외부감사법의 개정(신외감법)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 제고

구분	평균 감사시간			평균 감사보수 (단위:천원)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전체시장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전체시장
	688사	1,246사	1,934사	697사	1,208사	1,905사
2018년	2,889시간	1,104시간	1,758시간	233,465	91,442	141,965
2019년	3,643시간	1,200시간	2,094시간	362,849	113,497	202,201
2020년	4,049시간	1,358시간	2,342시간	437,096	138,700	244,851
2021년	4,084시간	1,473시간	2,429시간	466,679	158,092	267,868
2018년대비 2019년증감	754시간 (26.1%)	96시간 (8.7%)	337시간 (19.2%)	129,284 (55.4%)	22,055 (24.1%)	60,236 (42%)
2019년대비 2020년증감	406시간 (11.1%)	158시간 (13.1%)	248시간 (11.2%)	22,055 (6.1%)	25,203 (22.2%)	42,650 (21.1%)
2020년대비 2021년증감	35시간 (8.7%)	116시간 (8.5%)	86시간 (3.6%)	60,236 (13.7%)	42,650 (30.7%)	23,017 (17.6%)

4-3. 2018년 외부감사법의 개정(신외감법)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 제고



평균 감사시간 변동 현황



평균 감사보수 변동 현황

4-4. 2018년 외부감사법의 개정(신외감법) : 금융당국 회계감독업무 선진화

[1] 회계법인의 보고의무를 강화

－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에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정보 뿐 아니라 연차 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을 추가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

[2]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제재 신설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및 기타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의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의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3]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위반하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에 대해서는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이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4]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내부신고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내부신고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내부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내부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대분류	소분류	조항	적용연도
외부감사 대상 개편	외감대상 기준	기존기준(자산,부채,종업원수)에 매출액 기준 추가	2020년
	외감대상 유형	기존기준(주식회사)에 유한회사 추가	
회사의 회계처리 책임 및 역량 강화	내부회계 관리제도 실효성 확보	인증수준을 검토(Review)에서 감사(Audit)로 상향	2019년
		연결기준 시행	2023년
		대표자의 주주총회 보고의무 강화	2019년
	감사 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감사 전 재무제표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의무화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강화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사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무 및 권한 강화	
외부감사 감사품질 제고	감사인 독립성 (감사품질)제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020년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및 선임절차 개선	2019년
	감사품질 제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 도입	
		외부감사 품질관리기준 도입	
금융당국 회계감독업무 선진화	회계법인 감독 및 제재 강화	회계법인의 보고의무 강화	2019년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제재 신설	
	회계부정 제재 강화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직무유기 손해배상책임 및 부정청탁 벌금형 도입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